



백양골 소식

2019년
7월

■ 제 493호 ■

발행인:장성군수/편집인:총무과장/제작:총무과/☎ 390-7231/FAX 390-7579/jangseong.go.kr/2019.7.22.(월)

안전이!
안심이!
가
알려주는

물놀이
안전수칙!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셔요!
(다리→팔→얼굴→가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프을 때, 음주 후는
수영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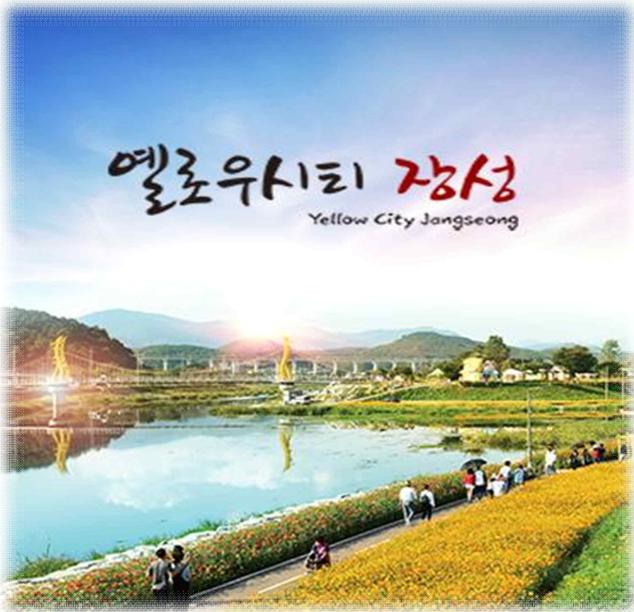


수영능력 과신 **NO!**
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YES!**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모한 구조 **NO!**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119 신고!**





[일반행정 소식] ————— 3

1. 2019년 숨은 의인 및 선행자 추천
2.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니다.
3. 군(軍)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4.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5.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6.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7.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
8. 하계 휴가철맞이 「착한가격업소」 홍보
9. 2019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
10.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안내
11.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안전신문고와 함께
12.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보건·복지 소식] ————— 13

1.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신청하세요!
2.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3. 의료급여대상자 국가건강검진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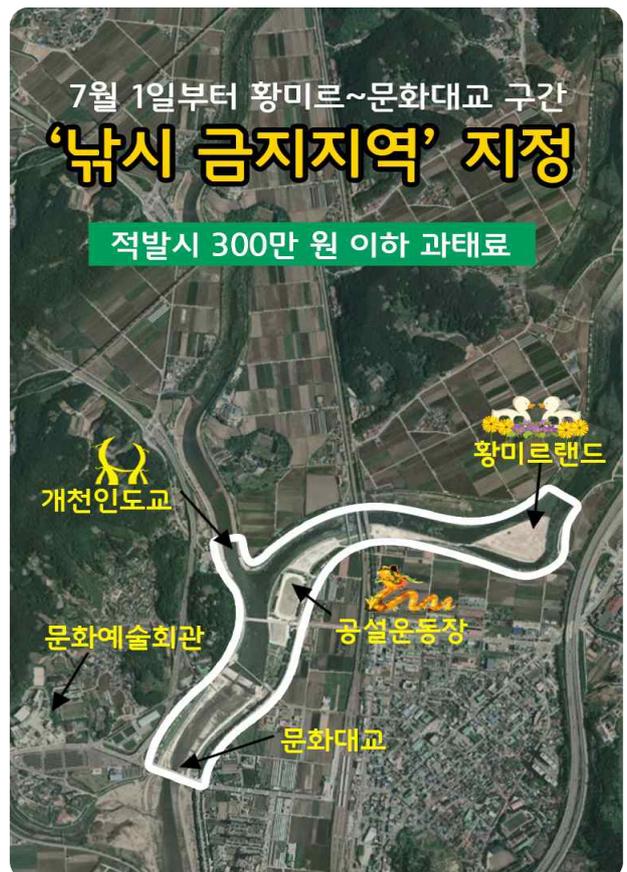
4.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6. 치매예방 관리사업
7.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개안 수술 지원
8. 암 검진 사업
9.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0.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및 예방관리
11.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12. 폭염대응 행동 요령

[농·축산 소식] ————— 17

1.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적기에 추진합니다.
2. 반려동물 등록제 알림
3. 2020년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유관기관] ————— 19

1.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뚫!
2.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안내



2019년 숨은 의인 및 선행자 추천

□ 숨은 의인 및 선행자 표창 제도

-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해 타에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활기·매력·온정이 넘치는 전담을 만드는데 기여한 숨은 의인과 선행 도민을 표창

□ 표창 개요

- 표창시기 : 연중 매월
- 표창훈격 : 전라남도지사
- 표창대상 : 선행이나 공적이 뚜렷한 도민이나 출향인사 * 비도민 가능
 - 표창기준 : 훈훈한 지역 만들기 관련 미담 수범자, 숨은 의인 및 봉사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자 중 공적증빙이 가능한 자

□ 협조사항

-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주위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 및 추천

문의처 ☎ 390-7231 (총무과 행정담당)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8월15일은 제74주년 광복절입니다.

- 각 가정에서는 8.15.(목)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군(軍)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 진정서 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접수기간

- 2018. 9. 14. ~ 2020. 9. 13.(2년)

- 대상기간

- 1948. 11. 30. ~ 20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 방법

-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이메일 :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문의처 ☎ 390-7239 (총무과 대외협력담당)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납부

□ 납 세 자

- 2019. 6. 1.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등

□ 납부기간 : 2019. 7. 16. ~ 7. 31.

※ 재산세(주택분)

- 연세액 20만원 이하 : 7월 일괄 부과 · 징수
- 연세액 20만원 초과 : 7월, 9월 1/2씩 부과 · 징수

□ 납부방법

- 방 문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의 창구
- 인 터 넷 : 위 택 스(<http://www.wetax.go.kr>)
- 가상계좌 :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납부(고지서참조)
- 신용카드 : 모든 신용카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9개사 신용카드 가능
 - ※ 비씨, KB국민,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 미납부시 불이익

- 3% 가산금 가산

(본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 2개월부터 매월 0.75% 증가산금 추가)

문의처 ☎ 390-7281, 7291 (재무과 부과담당)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 납세자

- 7월 1일 현재의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대상

-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기숙사 등 과세제외 면적 비포함)
 - 세율 : 1㎡당 250원

※ 과세제외 대상(면적)

-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등

□ 신고납부방법

- 자진 신고납부 : 2019. 7. 1. ~ 7. 31.
- 미납 사업장 직권 고지(보통징수 : 8월, 9월)
 - ※ 미신고 납부시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

□ 신고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

- 해당 읍·면 및 장성군청 재무과

문의처 ☎ 390-7386 (재무과 부과담당)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

□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란?

- 스마트폰(모바일) 앱으로 지방세 고지내역을 받고, 고지내역 확인 및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 서비스대상 : 지방세 정기분

-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 신청대상 : 개인(법인은 제외)

□ 이용방법

-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사 앱을 내려 받아 설치 후 지방세 고지서(청구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령과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 앱 :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 금융사 앱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 이용혜택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 전자송달 고지서를 받게 되면 150원의 세액공제
 - 전자송달 고지서와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

□ 유의할 사항

-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종이고지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앱 삭제, 핸드폰 변경 시 전자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고 전자송달 중복 신청 시 마지막으로 신청한 앱으로 발송됩니다.

문의처 ☎ 390-7291 (재무과 부과담당)

하계 휴가철맞이 「착한가격업소」 홍보

□ 「착한가격업소」 란?

-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 우리군 착한가격 업소 현황

영하식당	그집	상무세탁소
		
백반 7,000원	보리밥 7,000원	신사드라이(상,하) 6,000원
장성읍 역전로 100-6 ☎ 061-393-2277	북이면 백양로 178 ☎ 061-394-5340	삼계면 금성길 27-4 ☎ 061-394-6903

□ 협조사항

- 2019년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타 기관 및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군 방문 시 착한가격 업소를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2019년 하반기 착한가격 업소 모집 시 희망 업소 참여

문의처 ☎ 390-7252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2019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 풍수해보험이란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 (소상공인만 해당)이며, 보험 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은 ?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차상위계층 75~92%, 일반 52.5~90%, 소상공인 34~92% 지원

□ 손해평가는 ?

- 정액보상 : 전과, 반과, 소과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포함)
-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 소과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과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침수손해 부보장(不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지진재해 부보장(不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

□ 가입문의

- 장성군 안전건설과, 읍·면행정복지센터, 5개 판매보험사
- ※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농협중앙회 제외

문의처 ☎ 390-7495 (안전건설과 방재담당)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안내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 가입대상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 보상범위

-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기한

- 신규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 기존시설 : 기존 보험가입 기간에 유의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안전신문고와 함께!

□ 「여름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9. 7. 1. ~ 8. 31.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Play 스토어, App Store에서 다운)
 -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 신고대상
 - 수영장,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안전 위험요인
 - 유원지, 야영장, 휴양림 등 피서지 안전 위험요인
 - 하천, 비탈면, 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지역
 - 화재, 전기 감전, 불법 주·정차 등 안전 무시 관행
 - 도로·교통시설 파손 등 생활안전 위험요인 전반



문의처 ☎ 390-7119(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팔-얼굴-가슴)부터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



물이 깊지 않거나 얇아지는 곳은 특히 위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 NO!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장시간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A-07

문의처 ☎ 390-8758(안전건설과 사회재난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신청하세요!

65세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

□ 서비스 대상

- 1급 ~ 3급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대상자로 최근3개월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 한부모가정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 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사·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 제공기간 및 서비스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월)	정부지원금(월)	본인부담금(월)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수급자	월 336,000원	월 336,000원	면제
	교육·주거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315,840원	월 20,16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수급자	월 378,000원	월 366,660원	월 11,340원
	교육·주거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355,320원	월 22,680원
월 40시간(C형)	의료수급자 중 장기병원사례관리 퇴원자	월 555,000원	월 555,000원	면제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지원(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등 보조)
- 건강 및 가사지원(재활운동 보조 및 청소, 식사준비등)
-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등)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390-7419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 **변경일자** : 2019. 7. 1.(월) ~

□ **폐지목적**

의학적 상태에 따라 1 ~ 6급으로 장애등급을 구분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등급별로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함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 및 낙인감 해소

□ **변경사항**

서비스		현 행	변 경
① 장애인등록		장애등급	장애정도
		6등급(1 ~ 6급)	2단계(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장애인복지카드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1 ~ 6급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③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1 ~ 3급장애인	모든 장애인
	등급	4등급	15등급
	소득기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이하	전국 가구평균 소득 180%이하
	월 지원시간	47 ~ 441시간	60 ~ 480시간

※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장애등급 판정받으신 분들은 (2019.7.1.이전 장애등급 판정자) 변동사항이 없으며,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하시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및 연금과 수당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문의처 ☎ 390-7311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의료급여대상자 국가건강검진 지원 제도

- 대 상 :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구 분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암검진
대 상	만 19세~64세	만 66세 이상	국가암검진대상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검진 ※ 2년마다 1회 실시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 5대 암종 검진 (위, 간, 대장, 위, 자궁경부)
검진비용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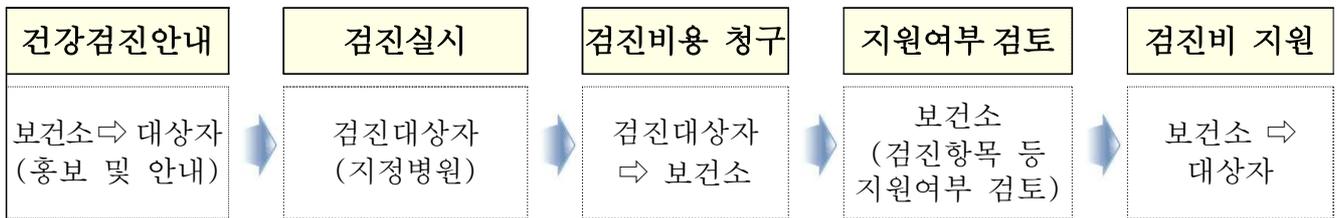
□ 검진절차

-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건강검진 기관 방문
- ※ 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별도 통보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처 ☎ 390-7413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 기 간 : 2019. 7. 1. ~ 10. 31.
- 대 상 : 20명(장성 내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부부, 예비부부)
- 검진기관 : 3개소(에덴병원, 시엘병원, 프리메디산부인과/ 광주 소재)
- 지원금액 :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 검진내용
 - 여 성 : 초음파검사, 자궁질환 관련검사, 흉부 X-Ray 등
 - 남 성 : 정액검사, 항체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등
- 지원절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기 간 : 2019. 7월 ~
- 대 상 : 관내 난임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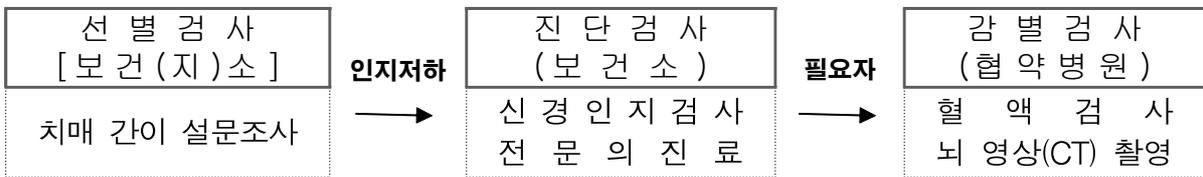
구 분	당 초	변 경
지원대상	○ 만44세 이하	○ 연령폐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외수정 7회 - 인공수정 3회 ○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당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외수정 12회(신선 7, 동결 5) -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44세 이하(회당 최대 50만원) - 만45세 이상(회당 최대 40만원)

문의처 ☎ 390-8363 (보건소 건강생활계)

치매예방 관리사업

□ 치매조기검진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만60세 이상 관내 주민
- 장 소 : 보건소·지소·진료소, 기관·단체, 경로당 등
- 내 용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감별검사비 15만원 지원

가 구 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직장	66,173	113,335	146,494	180,259	213,859
	지역	25,519	104,203	147,114	187,654	229,322

□ 치매치료비 지원

- 기 간 : 연중
- 대 상 : 만60세 이상 치매치료제 복용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내 용 : 치매 진료비·약제비 월 3만원 내 실비 지원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의사소견서, 약 처방전, 통장사본

□ 「치매예방수칙 3. 3. 3」을 실천하세요!

치매 예방수칙
3. 3. 3

3권 (행동)

-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 부지런히 읽고 쓰기

3금 (금지)

- 술은 적게 마시기
- 담배는 피지 않기
-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3행 (행위)

-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 매년 치매 조기검진 받기

문의처 ☎ 390-8317 (보건소 치매예방담당)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개안 수술 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대 상 : 만 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한도(1인 양쪽지원가능)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증명서(해당자)
- 신청절차 및 방법
 - 보건소로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개안 수술 지원

-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증명서(해당자)
- 신청절차 및 방법
 - 보건소로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대상자 검토 및 선정 통보
-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문의처 ☎ 390-8340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암 검진 사업

-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 검진기관 :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 기독의원 등 검진지정 병·의원

구 분	대 상 자	검진주기	검 사 항 목	비 고
위 암	만40세 이상	2년	위장조영검사 및 위내시경검사	홀수년도 출생자
대 장 암	만50세 이상	1년	대 변 검 사	검사결과 양성소견자 대장내시경 검사
유 방 암	만40세 이상	2년	유 방 촬 영 술	홀수년도 출생자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 암	만40세 이상 고 위 험 군	6개월	간초음파+혈액검사	고 위 험 군

※ 해당년도 수검완료 시 암환자 의료비가 지원되므로 반드시 검진 받으세요.

문의처 ☎ 390-8341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대 상 : 소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암 확진자
- 지원내용
 - 소 아 암 : 백혈병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최대 2,0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 전체암 / 최대 220만원, 3년간
 - 건강보험가입자 : 5대암(위, 대장, 간, 자궁경부, 유방암) / 최대 200만원, 3년간
 - 폐 암 : 최대 200만원, 3년간
- ☞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건강보험료 기준액 : 직장가입자 96천원, 지역가입자 97천원 이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 ※ 국가 암검진 수검시 암환자 의료비가 지원되므로 반드시 검진 받으세요.

문의처 ☎ 390-8341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및 예방 관리

□ 비브리오패혈증이란?

- 비브리오 패혈균 감염에 의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5~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급성패혈증입니다.

□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됩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간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환자 등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 이하로 저온 저장, 85℃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을 통해 치료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390-8310 (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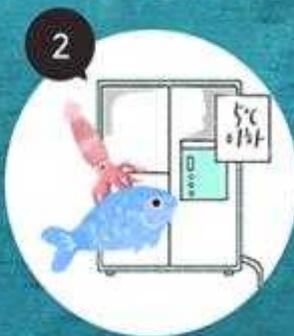
2019.05.30



더 자세히 알아보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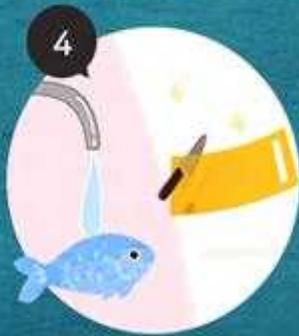
1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하기



2 어패류는 5°C 이하 저온보관하기



3 어패류 85°C 이상 가열 처리후 섭취하기



4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손질하고 사용한 조리도구는 꼭 소독하기



5 피부에 상처가 있다면 바닷물 접촉 피하기



6 고위험군(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면역저하 환자 등)은 특히 주의!

6/7

문의처 ☎ 390-8310 (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진드기 매개감염병이란 ?

-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 유행기간 : 4월 ~ 11월
- 감염경로 :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
- 주감염자 : 농업종사자, 야외작업자 및 등산 등 야외 활동자
- 주요증상 : 38c 이상의 고열, 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주의사항
 - 작업 시 긴팔, 긴 바지, 모자 등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기
 - 풀밭위에 옷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있거나 물린 것을 발견하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의료기관 방문
 - 고열, 오한, 두통, 검은 딱지(가피)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

※ 아직까지 예방접종백신은 없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함

문의처 ☎ 390-8310 (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

폭염대응 행동 요령

□ 폭염대응 행동요령 안내

- 기 간 : 2018. 6월 ~ 9월(폭염특보 발령시¹⁾)
- 대 상 : 독거노인, 허약노인, 취약계층 등 건강위험 질환군

○ 물을 자주 마십니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을 마십니다.
- 술이나 커피는 마시면 안 됩니다.

○ 시원하게 지냅니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합니다. (양산, 모자 착용)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니다.

-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발일 자제 및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 가까운 무더위 쉼터(경로당, 마을회관, 읍·면 사무소, 농협 등)를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로 연락합니다.

- 119, 보건소 등

1) 폭염특보 발령기준

- ◆ 주의보 :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경 보 : 일 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문의처 ☎ 390-8343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적기에 추진합시다.

□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6월 ~ 12월 (7개월)
 - 일제 공동방제 실시 : 7. 30. ~ 8. 15. / 3주간
- 사업규모 : 4,000ha ('18 벼 재배면적 3,946ha)
- 지원대상 : 2019년 일반단지 벼 재배 관내농업인
- 대상병해 : 6종 (충해 2, 병해 4)
 - 벼멸구, 흑명나방, 이삭도열병, 흰잎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 지원기준 : 1회 공동방제, 150천원/ha
 - 약제비 8만원 + 공동방제비 6만원 + 도우미비 1만원
 - ※ 읍면에서 도우미 미선정 시 도우미비용 약제비로 계상가능
- 방제방법 : 4종 (광역방제, 드론방제, 마을방제, 자가방제)

□ 공동방제 시 주의사항

- 자가방제를 신청한 경우 마을 전체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춰서 약제 살포 추진
- PLS 및 농약안전사용에 의거 적량을 사용하여 중복살포 등 약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
- 친환경단지·타작물 인근 및 축사(양봉), 내수면 인접필지(100m이내) 내 농약을 살포할 경우, 비산으로 인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되거나 가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읍면·지역농협·공동방제단 협의를 통해 비산되는 농약사용을 금지하고 입제농약을 사용하여 자가방제 유도
- 사전에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방제일정(날짜, 시간 등)을 반드시 공지하고, 방제도우미는 방제필지안내 및 방제여부확인 등 능동적으로 참여

문의처 ☎ 390-8415 (농업축산과 식량생산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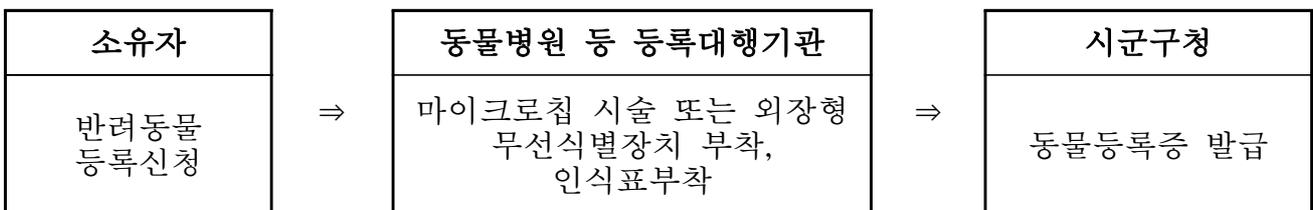
반려동물 등록제 알림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중입니다.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을 실시해야 하므로,
-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대행기관(장성군 소재 이외 타 시군 동물 등록업체도 가능) 방문하여 동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등록제

- 등록대상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개
 - 등록방법 :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부착
 - 등록수수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수수료 책정에 의거
- ※ 동물보호법 제47조에 의거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등록절차



□ 동물등록대행기관

- 우리군 등록대행기관 (2개소)
 - 장성 동물병원(정운조, 장성읍 010-6690-2141)
 - 옐로우 동물병원(김선홍, 삼계면 010-5415-9114)
- 타 시군 등록기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참조

문의처 ☎ 390-8424 (농업축산과 동물방역담당)

2020년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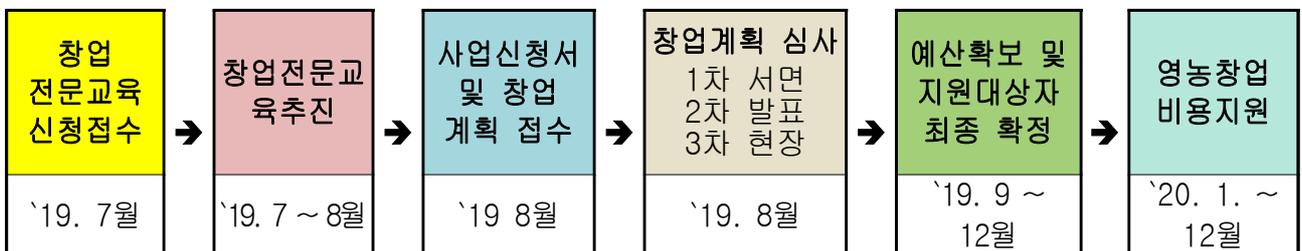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20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 관내 거주 농업인(예비농 포함)
 - (연 령) : 1976. 1. 1. ~ 2002. 12. 31. 출생자
 - (농업인 판단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예비농의 경우 2020년에 농지(임대포함) 확보 계획이 있는 자
- 사업량 : 20개소(예정)
 - ※ 사업량은 신청자 수, '20년도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지원액 : 개소당 3,000만원(균비 2,100만원, 자부담 900만원)
- 지원내용 : 농업시설 신축 및 개보수, 농업용 장비, 신기술 투입, 6차 산업 기반조성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9. 7. 26.(금)
- 신청서류 : 교육신청서(군 홈페이지 서식 첨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자만), 병적증명서(남성의 경우)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 담당 ☎ 390-8464

□ 추진일정



문의처 ☎ 390-8464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

소화기 ·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뚫!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에서 불이 나면 누가 깨워줄까요?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7년간(연평균)
 전국 화재건수 **42,954건**
 매년 화재 사망자 310명 발생
 그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148명
 전체 화재 사망자의
47.7%가 주택화재로 사망

오늘 **주택화재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를 설치하세요!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 소방시설은 “**주택화재경보기 및 소화기**”입니다.

문의처 | 소방관서(대표전화) 원스톱 지원센터



문의처 ☎ 360-0861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안내

이용절차



- 1단계 이용신청** www.kvoting.go.kr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2단계 이용승인** 관할 선관위의 이용승인 (승인 전 이용협약 체결)
- 3단계 선거개설** 명부 및 후보자 등록사항 등을 시스템에 반영
- 4단계 수수료 납부**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투표 업무지원센터에 문의
- 5단계 투·개표** 투표 안내 문자 전송 관리 및 투표 진행상황 확인 등
- 6단계 선거정보저장** 개표결과 등 인쇄, 저장 (투표종료후 7일 이내 가능)

이용수수료 (부가세 포함)



단체 및 3개이하 동시선거 기준

선거인수

- 2천명 이하 인당 770원
- 4천명 이하 인당 660원
- 6천명 이하 인당 550원
- 6천명 초과 별도협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서비스란 ?

각종 단체의 의사결정 투표, 대표자 선출 등 선거에서 PC와 스마트폰, 일반휴대폰을 사용하여 투·개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지원하는 서비스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범위

이용대상

공공기관, 정당, 단체, 학교, 공동주택 등

이용분야

- 대표자 등 임원 선출
- 의사결정을 위한 안건투표
- 정관 또는 규약 개정 찬반투표

문의처 ☎ 394-1390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2019. 7. 1.부터
시행됩니다.

☞ 목적

농약의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약 판매 및 구매 정보를 기록·관리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구매자	농약 구매자 (농업인) 정보 제공	농약 구입시 구매자 정보 (이름·주소·연락처·사용농작물명) 제공
판매업자	농약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보존	판매업자 등은 농약 품목명 등 8가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 *(8가지 정보)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 구매자 이름, 주소, 연락처

☞ 법적근거

구매자(농업인)는 농약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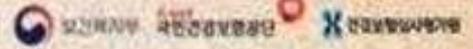
☞ 시행일자

농약 판매정보 기록	농약 판매정보의 이력 관리
2019. 7. 1.	2020. 1. 1.

☞ 정보의 제공 및 보호

구매자(농업인)는 농약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보존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거 수집된 정보는 농약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2019년 더 든든해지는 건강보험 혜택

MRI
건강보험 적용
(복부, 흉부, 안면)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하복부, 비뇨기,
전립선, 자궁)

상급병실
2·3인실
건강보험 확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확대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
건강보험 확대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6월 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천만원 과태료부과

10,000,000
과태료 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6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휴대축산물 미신고 반입자 과태료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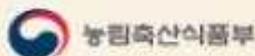
휴대축산물 :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1회 위반 **500만원** | 2회 위반 **750만원** |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

*그 외의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아시아(6개국) 중국(홍콩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유럽(13개국) 리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아프리카(29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요장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키에문,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